



2024. 9. 5.(목) 9:30
제30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

검 토 보 고 서

남양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운 영 위 원 회
전 문 위 원 윤 선 기

남양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제안경과

- 발의년월일: 2024. 8. 23.
- 발 의 자: 이진환 의원 등 8인

2. 제안이유

- 남양주시의회 의원배지의 규정을 현실화함으로써 규칙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의원배지 모형 및 규격 변경 (제6조제1항제2호, 제6조제2항)
- 나. 의원배지 훼손·분실에 따른 재교부 시 의원이 비용을 자부담하는 조항을 삭제 (제7조제3항)

4. 참고사항

- 가. 예산조치 : 붙임1 (비용참조)
- 나. 관련부서 : 의회사무국

5. 검토의견

- 배지의 제작비용을 의원에게 부담시키도록 강제하는 다른 법령이 없고,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위 규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, 그 외에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없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동 규칙 개정 후에도 세출 및 세입의 증감이 발생하는 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

4. 작성자

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왕은선